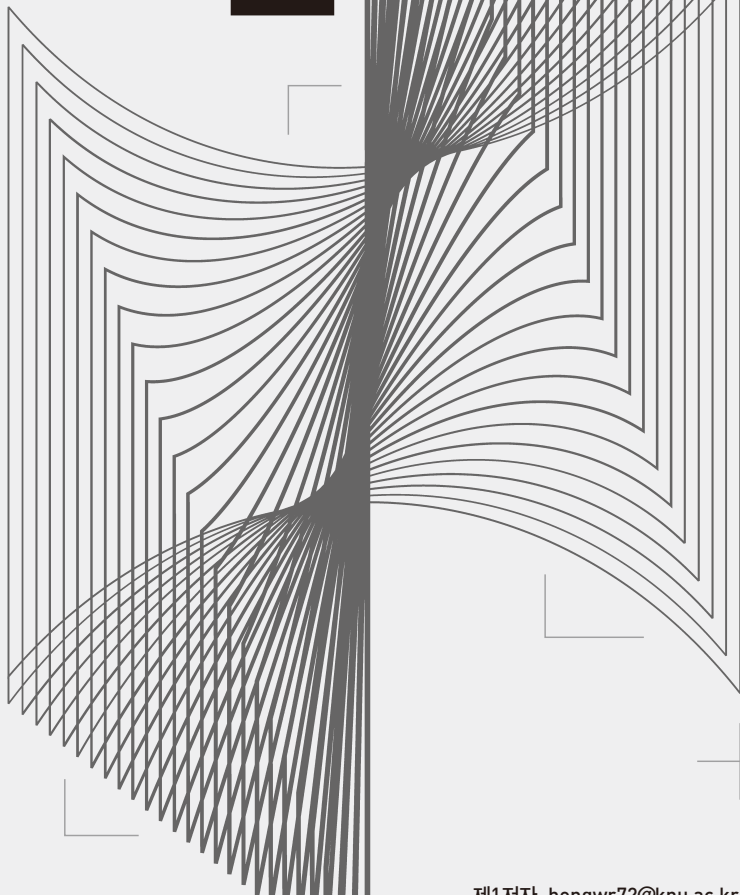


논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7호

(2025/겨울)



제1저자, hongwr72@knu.ac.kr

칸트의 용서 개념과 용서의 의무

Sussman의 세 가지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홍우람(경북대학교 · 철학 · 부교수)

<https://doi.org/10.21738/JHS.2025.12.57.9>

I. 들어가는 말

■ 여러 칸트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칸트는 용서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특히 칸트의 주요 저작들에서 용서에 대한 언급이 드물다는 사실은 칸트 철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칸트는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며, 심지어 칸트 윤리학에는 용서 개념이 적절하게 자리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철학 연구자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예컨대, Lang은 “칸트에게는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는 1차적 의무와 ‘1차적 의무 위반을 처벌해야 한다’는 2차적 의무에 수반하는 ‘용서해야 한다’는 3차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Lang이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자율성이 도덕적 의무의 궁극적 토대라는 칸트의 입장이 용서 개념을 도덕적 개념으로 수용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 예컨대, D. Sussman, “Kantian Forgiveness”, *Kant-Studien*, 96(2005), p.85; P. Satne, “Forgiveness and Moral Development”, *Philosophia*, 44(2016), p.1029 참조. 국내 논문으로는 정성관, 「칸트 철학에서 본 정의와 용서」, 『철학논집』, 54(2018), 31쪽 참조.

** B. Lang, “Forgiveness”,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31(1994), p.110.

*** Lang에 따르면 “실천적 판단에 대한 칸트의 관점에서 잘못된 사람은 사실상 자신의 처벌을 의욕한다.” 더 나아가 랑은 ‘용서’ 개념에 대해 소홀했던 것은 칸트만이 아니며, 대부분의 도덕철학자들은

용서에 대한 칸트의 언급이 드문 것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드물게 등장하는 칸트의 용서에 대한 언급은 Lang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도덕형이상학』*에서 칸트는 용서(Verzeihung) 혹은 화해(Versöhnlichkeit)가 “인간의 의무”(MS 6:461)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기 때문이다.

칸트에 따르면 용서는 인간의 의무 중에서도 “덕의무”(MS 6:460)에 속한다. 따라서 칸트는 자신의 윤리학 내에 ‘용서’ 개념의 자리가 존재한다고 분명히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ussman이 지적하듯이, 이런 칸트의 진술은 용서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보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데,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용서의 의무에 대한 칸트의 주장이 충분한 부연 없이 “대략적인 진술”로 그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용서의 의무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윤리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윤리학과는 구별되는 영역에서 제시된 칸트의 논의들에 호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윤리학 주변의 영역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칸트의 윤리학 내에서 도덕적 의무 중 하나로서 용서의 자리가 충분히 해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용서

“처벌 개념에 대한 논의에 비해 확실히” 용서 개념을 무시해왔다고 지적한다(Lang, “Forgiveness”, p.110).

* 칸트 저작은 베를린 학술원판을 참조 및 인용한다. 인용시 『도덕형이상학 정초』(이하 『정초』)는 GMS, 『실천이성비판』은 KpV, 『이성의 오묘한 한계 안의 종교』(이하 『종교』)는 RGV, 『도덕형이상학』은 MS,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이하 『인간학』)은 Anth로 약칭한다.

** Sussman, “Kantian Forgiveness”, p.85.

*** 예컨대, 칸트의 종교철학에 주목한 논의는 Sussman, “Kantian Forgiveness”, pp.85~107, 칸트의 인간학에 주목한 논의는 정성관, 「칸트 철학에서 본 정의와 용서」, 31~51쪽 참조.

**** 이는 우리가 종교철학이나 인간학에 호소하여 용서의 의무를 설명하려는 Sussman이나 정성관의 논

의 의무에 대한 『도덕형이상학』의 불충분한 진술이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하는지 살펴보고, 그런 의문들에 대한 답변이 칸트의 윤리학 체계 내에서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II. Sussman의 세 가지 문제 제기

■ Sussman은 “칸트식 설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용서에 대한 설명을 전개하기 위한 자원을 칸트의 종교철학”에서 찾고자 한다.** 그가 보기에 ‘용서’ 개념이 칸트의 윤리학 체계 내에 도덕적 개념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있으며, 칸트의 윤리학 저술에 드물게 등장하는 용서에 대한 진술들은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 윤리학 체계 내에서 용서 개념의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Sussman이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Sussman이 제기하는 핵심적인 문제들을 아래

의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의 논의와 우리의 논의는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이와 유사한 시도는 Satne, “Forgiveness and Moral Development”, pp.1029~1055 이외에도, K. Moran, “For Community’s Sake – A Self-Respecting Kantian Account of Forgiveness”, in S. Bacin, A. Ferrarin, C. La Rocca & M. Ruffing(eds.), *Kant und die philosophie in weltbürgerlicher Absicht. Akten des XI. Internationalen Kant-Kongresses*, Boston: de Gruyter, 2013, pp.419~430 및 K. Moran & J. Timmermann, “Kant on Punishment, Pardon, and Forgiveness”, in P. Satne & K. M. Scheiter(eds.), *Conflict and Resolution: The Ethics of Forgiveness, Revenge, and Punishment*, Cham: Springer, 2022, pp.225~238 에서도 확인된다. 이들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의 차이는 이후 논의에서 드러날 것이다. 특히 III장과 IV장 참조.

** Sussman, “Kantian Forgiveness”, p.85.

와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Sussman이 제기하는 첫째 문제는 칸트의 응보주의에서 비롯한다. Sussman은 칸트의 응보주의를 “타인에 대한 모든 도덕적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도덕적 입장으로 느슨하게 정의한다.* 실제로 『도덕형이상학』에서 칸트가 “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MS 6:460)고 말할 때, 칸트는 Sussman이 정의한 도덕적 응보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도덕적 잘못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칸트는 그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 개인이나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을 주관하는 한 개인의 인격에서 찾지 않고, “어떤 초감성적 주체에 속하는 초절적(überschwengliches) 원리인 순전한 정의”(MS 6:490)에서 찾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처벌이란 자율성을 가진 이성적 존재자가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대가이며, 이런 마땅한 대가에 대한 요구는 어떤 특수한 개인의 사적인 요구가 아니라 보편적인 이성의 공적인 요구이다. 그러므로 Sussman이 지적하듯이 “처벌은 잘못을 당한 측에 대한 일종의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그런 [배상이나 보상] 권리의 특수한 보유자가 취하는 태도와 무관하게, 어떤 권리 침해의 즉각적인 개념적 귀결이다.”***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취하는 태도 중 하나이

* Sussman, “Kantian Forgiveness”, p.88 fn. 9. 이런 느슨한 정의를 통해 Sussman은 칸트를 응보주의자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된 논란을 피하고자 한다.

** 처벌에 대한 이런 입장을 칸트는 “처벌의 정의”(Strafgerechtigkeit, MS 6:490)라는 개념으로 축약해서 표현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성관, 「칸트 철학에서 본 정의와 용서」, 33~38쪽 참조.

*** Sussman, “Kantian Forgiveness”, p.89.

므로, 결국 칸트의 도덕적 옹호주의는 처벌을 피해자의 용서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자에게 마땅히 부과되어야 할 대가로 간주한다. 처벌이 피해자의 용서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면, 칸트가 인간의 의무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용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Sussman이 제기하는 둘째 문제는 첫째 문제와 곧바로 연결된다. 실제로 칸트는 용서가 덕의무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의로운 처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결과로 칸트는 용서 개념을 소극적으로, 즉 “지나치게 보복적인 경향을 자제하는”^{*} 태도로 규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Sussman은 이런 소극적인 용서 개념은 처벌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객관성은 칭찬할 만하지만, 적극적인 용서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한다. Sussman은 소극적인 용서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용서가 성립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먼저 용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 그리고 잘못된 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 등과 관련된 도덕적 특징들이 무시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잘못이나 적절한 처벌의 수위에 대한 평가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이 두 가지 조건에 따르면 용서는 가해자와 그가 행한 잘못된 행위 그리고 피해자와 그가 입은

* Sussman, “Kantian Forgiveness”, p.89.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칸트는 “순전히 복수를 위해 타인의 적의에 대해 스스로 증오로 대응하지 않는 것”(MS 6:460)을 용서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제시한다.

** Sussman, “Kantian Forgiveness”, p.89.

*** 이 네 가지 조건에 대한 Sussman의 논의는 Sussman, “Kantian Forgiveness”, p.86 참조. 우리는 이 네 가지 조건을 Sussman이 제시한 순서와는 다르게 제시할 것이다.

피해에 대해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런 평가 내용을 왜곡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유지할 것을 전제한다. 사실 이 두 가지 조건은 용서에 대한 칸트의 소극적 입장에서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전제된다. 용서의 의무를 언급하면서도 칸트는 Sussman이 정의한 응보주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은 두 가지 조건은 적극적 용서 개념과 소극적 용서 개념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Sussman에 따르면 우선 적극적 용서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유지하면서도 “엄정한 처벌 혹은 다른 형식의 공정한 응보나 속죄를 요구하지 않아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를 완화하여 “도덕적으로 훼손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Sussman이 지적하듯이, 정의로운 처벌에 대한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칸트 윤리학은 이런 적극적 용서 개념의 자리, 즉 “진정한 용서”**의 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워 보인다.

Sussman이 제기하는 첫째 문제와 둘째 문제가 도덕적 의무 중 하나로서 칸트가 제시하는 ‘용서’ 개념의 정체와 관련되어 있다면, 셋째 문제는 용서 개념에 대한 우리의 통상적 이해에 어울리는 용서의 한 가지 성격, 즉 ‘선택적’(elective)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Sussma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용서는, 적어도 언뜻 보기에는, 불가피하게 선택적 측면을 지니는 듯하다. 즉, 용서할지 말지의 문제는 그 상황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도덕적인 이유들이나 다른 어떤 이유들에 의해 종종

* Sussman, “Kantian Forgiveness”, p.86.

** Sussman, “Kantian Forgiveness”, p.89.

(혹은 항상?) 철저히 결정되지 않는다. 용서를 해도 안 해도 잘못이 아닌 경우가 적어도 종종 있으며, 오히려 우리는 용서하려는 경향성을 가질 때에 한해서 용서한다.*

Sussman에 따르면 용서는 개인의 특수한 심리적 경향성과 관련된 것이지, 객관적인 이유나 보편적인 원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는 이성적 근거에 의거한 자율적 선택의 결과물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심리적 경향성의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용서’라는 행위와 관련된 도덕적 주체, 즉 피해자의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지위는 칸트 윤리학의 설명과 긴장을 이룰 수밖에 없다.** 칸트에게 도덕적 행위자는 이성적인 자율적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런 긴장 관계는 용서를 도덕적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는 칸트의 입장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용서가 이성적 근거에 따른 자율적 선택의 결과물이 될 수 없다면, 어떻게 칸트 윤리학에서 용서가 도덕적 의무로서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가?

Sussman이 제기한 세 가지 문제들은 마치 용서에 대한 칸트 윤리학의 논의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이미 칸트 윤리학 내에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어지는 장들에

* Sussman, “Kantian Forgiveness”, p.90.

** Sussman, “Kantian Forgiveness”, p.90. Sussman에 따르면 가해자의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지위 역시 칸트 윤리학의 설명과 긴장을 이룬다. 가해자의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지위 중 적어도 일부는 피해자의 용서 여부와 관련되어 있고, 이는 결국 가해자의 도덕적 지위가 “타인의 심리와 변덕”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ussman, “Kantian Forgiveness”, p.90).

서는 Sussman의 세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 칸트 윤리학이 마련해 둔 답변을 추적하고자 한다. 먼저 III장에서 우리는 칸트가 도덕적 의무로서 제시하는 ‘용서’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도덕형이상학』의 관련 구절을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Sussman의 첫째 문제, 즉 어떻게 칸트가 정의로운 처벌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용서’를 도덕적 의무로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Sussman의 둘째 문제와 셋째 문제에 대한 칸트 윤리학의 답변을 확인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III. 칸트의 용서 개념: Sussman의 첫째 문제 제기에 대하여

■ 『도덕형이상학』에서 칸트는 인간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하는 악덕 중 하나로 “타인의 불행에 기뻐하는 것”(Schadenfreude)을 제시한다. 이것은 “타인의 불행을 함께 나누는 것”(Teilnehmung)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그중 가장 매혹적인 것이 바로 “복수욕”이다.(MS 6:459~460) 하지만 칸트가 모든 복수 행위를 악덕한 행위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처벌도 복수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처벌은 (그저 가해진 손해를 보상하는 일이 아니라) 범행자에게 그

범행에 대해 복수하는 일이다. 그러나 처벌은 모욕당한 자의 사적 권위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그와 별개인 법정에 의한 행위이다. 법정에 의해서 최고 우두머리의 법은, 그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효력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윤리학에서 반드시 그렇듯이) 법적 상태에 있는 인간을 (시민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순전한 이성법에 따라서만 고찰한다면, 최고의 도덕적 입법자 외에는 누구도 처벌을 내리고 인간에 의해 당한 모욕을 복수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최고의 도덕적 입법자(즉, 신)만이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내가 되갚으리라.”고 말할 수 있다.(MS 6:460)

처벌이란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에게 되갚아 주는 것, 즉 복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처벌의 권한은 범죄 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있지 않다. 법적 관점에서 처벌 행위는 피해자가 사적으로 행사하는 행위가 아니라 법정이 공적으로 행사하는 행위이며, 법적 처벌이라는 공적 행위의 권한은 궁극적으로 법을 명령한 자 혹은 입법자에게 있다(Cf. MS 6:331). 마찬가지로 도덕적 관점에서도 처벌 행위는 사적 행위이어서는 안 된다. 앞서 보았듯이 도덕적 처벌은 보편적 이성의 초절적 원리인 정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덕적 처벌의 권한은 오직 그런 원리의 최고 명령자 혹은 입법자, 즉 신에게만 속한다. 따라서 우리는 가해자에게 입은 피해를 손수 되갚는 일이 아무리 매혹적으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마치 처벌, 즉 정의로운 복수인양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어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순전히 복수를 위해 타인의 적의에 대해 스스로 증오로 대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심판자에게 복수를 요구조차 하지 않는 것이 덕의무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인간은 스스로 용서(Verzeihung)를 필요로 하기에 충분할 만큼 자신의 죄를 안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벌은 누구에 의해서든 결코 증오로부터 내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해(온유함)는 인간의 의무이다. 하지만 이것이 모욕에 대해 유약하게 용인하는 것(불의에 대해 온화하게 인내하는 것), 즉 지속적인 모욕을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엄정한) 수단을 포기하는 것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타인의 발 밑에 내던져 버리고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MS 6:460~461)

이 단락에 따르면, 화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용서는 인간의 의무이다. 이런 용서의 의무를 칸트는, 타인의 적의에 대해 사적으로 복수하기 위해 손수 증오로 되갚지 않으며, 심지어는 그런 복수를 신에게 요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규정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부분 모두 앞서 인용된 단락의 논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위에서 보았듯이, 법적이건 도덕적이건, 정의로운 복수, 즉 처벌의 권한은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오직 입법자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칸트는 용서를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Sussman이 정의한 도덕적 용보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칸트가 인간의 의무 중 하나로 제시하는 용서의 정체는, 첫째 규정에 따르면, 정의로운 공

적인 복수, 즉 공정한 처벌의 포기가 아니라 증오에 사로잡힌 사적인 복수 욕구의 포기이다.

용서의 정체에 대한 이런 첫째 규정은 이어지는 둘째 규정, 즉 신에게 복수를 요구조차 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 더욱 강조된다. 칸트에 따르면 신은 도덕법칙의 입법자이자 도덕적 처벌의 권한을 가진 유일한 심판자이다. 도덕적 처벌과 관련된 개인의 권한은 법적 처벌의 경우에 비해 더욱 제한적인데, 왜냐하면 법적 처벌의 경우 개인은 법적 처벌의 권한을 갖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법적 처벌을 요구할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정당한 법적 처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에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도덕적 처벌의 경우는 사정이 다른데, 칸트에 따르면, “도덕성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은 초감성적 대상으로서 초감성적 심판자 앞에서 시간 조건에 따르지 않고 판정”(MS 6:490 fn.)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잘못은 “복수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없”(MS 6:489)으며, 우리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아직’ 도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흡하다고 신에게 도덕적 처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요구는 증오에 사로잡혀서 사적인 복수를 욕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용서 개념에 대한 이런 규정만으로는 왜 용서가 인

* Ricken이 지적하듯이, “처벌은 초감성적 질서 속에서 완전히 집행되고, 따라서 정의는 의심되지 않는다”(F. Ricken, “Die Religionslehre als Lehre der Pflichten gegen Gott liegt außerhalb der Grenzen der reinen Moralphilosophie (TL 6:486–491)”, in A. Trampota, O. Sensen & J. Timmermann(eds.), *Kant’s “Tugendlehre”: A Comprehensive Commentary*, Berlin/Boston: De Gruyter, 2013, p.429). 이 단락에서 우리는 법적 처벌과 도덕적 처벌을 구별해서 언급했지만, 우리가 용서에 대해 논의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도덕적 처벌이다. 따라서 이후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처벌은 도덕적 처벌을 의미할 것이다.

간의 의무로 제시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피해자 개인에게 정의로운 처벌, 즉 공적인 복수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로부터 피해자 개인에게 사적인 복수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도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피해자 개인의 사적인 복수가, 비록 정의로운 공적인 복수로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정당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이유로 칸트는 ‘용서’가 인간의 의무인 두 가지 이유를 덧붙인다. 칸트에 따르면 용서가 의무인 첫째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잘못을 저지르며 따라서 타인의 용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Satne는 첫째 이유가 둘째 이유보다 “더 실질적이고 따라서 문헌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이유 때문에 용서를 의무로 제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칸트가 제시한 첫째 이유는 결국, 모든 인간은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즉 악하기 때문에 용서를 필요로 하고, 따라서 모든 인간은 “타인을 용서함으로써 일종의 호혜성(reciprocity)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악하다는 전제는 그런 호혜성에 대한 기대를 무효화하므로, Satne는 칸트의 추론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Satne의 이런 해석은 호혜성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결과주의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즉, Satne는 칸트의 추론이, 용서 행위의 결과로서 초래될 호혜적인 타인의 용서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결과주의적 해석은 칸트의 입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 Satne, “Forgiveness and Moral Development”, p.1035.

용서의 의무에 대한 칸트의 논의는 타인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시되고, 실제로 칸트는 사랑의 의무와 관련하여 호혜성, 즉 “상호적인 호의”(MS 6:451; Cf. 6:449)에 대해 언급한다. 칸트는 타인에 대한 의무를 사랑의 의무와 존경의 의무로 구별하면서, 전자의 의무 수행은 타인을 구속하는 데에 반해서 후자의 의무 수행은 타인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구별이 가능한 이유는 사랑의 의무 수행은 “공적이 되는”(verdienstlich) 것인 데에 반해서, 존경의 의무 수행은 “지당한”(schuldig) 것이기 때문이다(MS 6:448). 다시 말해서, 존경의 의무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좁은 의무”이므로 그 의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 “넓은 의무”로서(MS 6:450) 사랑의 의무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바로 이런)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으므로 그 특정한 의무 행위의 수행은 나의 공적이 되고 따라서 “나의 행위의 수혜자는 바로 그 특정한 행위에 대해 나에게 빚을 지게 된다.”* 이렇게 칸트는 사랑의 의무를 논의하면서 호혜적 성격을 강조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설사 사랑의 의무가 호혜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의무’로서의 지위는 그런 호혜적 성격에서 비롯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랑의 의무에 따라 타인에게 호의적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기대되는 호혜적인 타인의 호의적 행위는 나의 의무 수행의 결과일 뿐, 나의 의무 수행의 이유가 아니다. Satne가 지적했듯이 그런 호혜

* D. Schönecker, “Duties to Others from Love”, in A. Trampota, O. Sensen & J. Timmermann (eds.), *Kant’s “Tugendlehre”: A Comprehensive Commentary*, Berlin/Boston: De Gruyter, 2013, p.313.

적인 결과는 기대한 대로 내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을뿐더러, 그런 결과를 목적으로 삼은 행위는 결국 나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은 행위에 불과하고, 따라서 진정한 의무적 행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칸트에 따르면 진정한 의무가 될 수 있는 목적은 오직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목적으로” 표상되는 “순수 이성의 목적”(MS 6:380)뿐이며, 이렇게 “의무인 동시에 목적인 것들은 자신의 완전성과 타인의 행복”(MS 6:385)뿐이다. 요컨대, 사랑의 의무는 타인의 행복, 즉 “타인의 고유한 목적을 (비도덕적이지 않는 한) 나의 목적으로 삼는 것”(MS 6:450)이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므로 자신의 행복은 결코 ‘의무인 동시에 목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타인의 행복은 다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타인의 행복은 ‘의무인 동시에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사랑은, (행복의) 이득에 대한 계산 없이도 그 자체로, 세계를 하나의 아름다운 도덕적 전체로서 완전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MS 6:458)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본성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세계에 속한 타인의 호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은 “인간성 일반에 대한 자신의 이념 안에 전체 인류를 포괄하는 입법적 이성”(MS 6:451)의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명령으

* A. Trampota,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an End in Ethics”, in A. Trampota, O. Sensen & J. Timmermann(eds.), *Kant’s “Tugendlehre”: A Comprehensive Commentary*, Berlin/Boston: De Gruyter, 2013, pp.154~155.

로 주어진다. 용서의 의무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고 따라서 타인의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설명에서 칸트의 요점은 호혜성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적 조건이다. 그런 본성적 조건에 따라 입법적 이성(法理)은 타인의 잘못에 대해 용서하는 호의를 베풀도록 요구한다.

칸트가 용서를 의무로 간주하는 둘째 이유는, 처벌은 결코 증오로부터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Satne가 둘째 이유보다 첫째 이유가 더 ‘실질적’이라고 말한 까닭은 앞서 살펴본 Sussman의 둘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Sussman과 마찬가지로 Satne는, 칸트가 제시한 둘째 이유가 결국 처벌의 객관성에 대한 소극적인 요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그가 보기에 둘째 이유는 “처벌은 감정에 휘둘림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이런 이유에서 의무로 제시되는 용서란 “제한된 형식의 용서”에 불과하다.* 우리도 역시 둘째 이유의 요점 중 하나는 처벌의 객관성 혹은 공정성에 대한 요구라는 것을 인정한다. 도덕적 처벌로 한정해서 이야기하자면, 앞서 지적했듯이, 초감성적 심판자인 신은 어떤 도덕적 잘못도 처벌하지 않고 남겨두지 않는다. 나아가 Satne가 지적하듯이 “얼마만큼의 고통이 도덕적 잘못에 비례하는지 결정(또는 집행)하는 문제는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 신의 소관”**이다. 따라서 우리는 증오를 품고서 정의의 원리에 따라 정해진 처벌 이상의 복수를 바라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째 이유의 요점이

* Satne, “Forgiveness and Moral Development”, p.1035.

** Satne, “Forgiveness and Moral Development”, p.1032.

오직 처벌의 객관성과 공정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Sussman이 제기한 둘째 문제와 함께 IV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IV장의 논의로 나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덧붙일 점은, 칸트가 용서를 덕의무로 규정하면서도 칸트가 용서를 굴욕적인 태도 혹은 비굴한 태도와 분명하게 구별한다는 점이다. 칸트에 따르면 증오에 사로잡힌 사적인 복수욕을 포기하는 용서와 타인이 가한 피해를 무력하게 용인하는 것은 다르다. 『도덕형이상학』에서 칸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다루면서 “어떤 인간의 인격 내에 있는 인간성은 그가 다른 모든 인간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존경의 대상”이며 “그 자신도 그런 존경을 스스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MS 6:435)고 말한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도 그가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에게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고 그저 참아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용서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존엄성을 버리는” 것,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IV. 용서의 의무: Sussman의 둘째 문제 제기에 대하여

■ III장의 논의에 따르면 칸트는 도덕적 옹호주의를 고수하면서도 용서를 도덕적 의무 중 하나로서 자신의 윤리학 체계 내에 수용하고자 한다. 그렇게 수용된 칸트의 용서 개념은 증오에 사로

잡힌 사적인 복수욕의 포기로 규정된다. 하지만 Sussman이 둘째 문제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용서 개념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규정되는 한, 칸트 윤리학은 적극적인 용서, 즉 “진정한 용서”^{*}를 수용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과연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앞서 보았듯이 Sussman은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용서의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이 조건에 따르면 진정한 용서는 도덕적 응보주의를 포기 혹은 완화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도덕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한 후에 Sussman은 “용서는 최소한 피해자가 분노를 거두고 보복이나 사과 등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청구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이런 용서 개념은 분명히 『도덕형이상학』에서 칸트가 제시한 용서 개념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전자의 용서 개념만이 진정한 것이고, 후자의 용서 개념이 진정하지 못한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만약 적극성이 그 근거라면, 우리는 Sussman이 제시한 용서 개념보다 더 적극적인, 따라서 더 진정한 용서 개념을 떠올려 볼 수도 있다.^{***} 적극성이 근거가 될 수 없다면, 통상적인 용서 개념과의 부합 여부를 근거로 삼은 것일 수도

* Sussman, “Kantian Forgiveness”, p.89.

** Sussman, “Kantian Forgiveness”, p.87. 물론 그는 용서의 이런 최소한의 요구가 “도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식”(Sussman, “Kantian Forgiveness”, p.87)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이는데, 이 조건은 Sussman의 네 가지 조건에 대한 우리의 설명 순서를 따르면 처음 두 가지 소극적인 조건에 해당한다.

*** 예컨대, 우리는 순전히 도덕적인 관계보다 더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용서 개념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있다. 하지만 어떤 용서 개념이 통상적인지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스스로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아마도 Sussman은 기독교의 입장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논문 서두에서 “흔히 칸트의 도덕 철학은 일종의 세속화된 기독교로 제시되곤 하지만, 칸트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관심 주제인 용서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는 듯”하며 “칸트의 도덕 철학이 용서의 현상을 진지하게 다루거나 어떤 통찰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칸트의 도덕 철학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때 짐작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Sussman이 제시한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용서 개념이 기독교의 통상적인 용서 개념을 대표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전통적인 기독교적 입장에서 “용서라는 주제에 대한 근대적인 철학적 논의의 시금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영국의 성공회 주교 Joseph Butler의 용서 개념은 『도덕형이상학』에서 제시된 칸트의 용서 개념과 상당히 유사하다.

1726년에 출판된 『설교집』에 실린 15편의 설교 중 아홉 번째 설교에서 Butler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성경 구절에 주목하고, 그 안에 담긴 용서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그러므로 용서하라는 계율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율은

* Sussman, “Kantian Forgiveness”, p.85; p.86.

** C. L. Griswold, *Forgiveness: A Philosophical Exploration*, New York: CUP, 2007, p.xv.

피해 및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분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적인 혹은 개인적인 피해에 의해 고양된 분개 혹은 분노와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타인이 피해자일 때는 그 피해에 대한 분개가 무고하며 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피해자일 때 그 피해에 대한 분개는 잘못이며 나무랄만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심이라고 여겨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후자의 경우에서도 이런 계율들이 그런 감정을 금지한다고 이해될 수 없다. 심지어 전자의 경우에서보다 후자의 경우에서 이런 분개의 감정이 더 크게 고양된다 하더라도, 후자의 경우에서 이런 계율들이 그런 감정을 금지한다고 이해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앞서 관찰되었듯이, 본성상 우리는 우리 자신과 관련된 일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의 계율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다른 계율들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피해의 경우에 단지 이런 자연적 감정의 과잉과 남용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보다 앞선 여덟 번째 설교에서 Butler는 화(anger), 분노(resentment) 혹은 분개(indignation) 등의 감정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한다. 넓은 의미에서 분노는 “성급하고 갑작스러운” 것과 “안정적이고 신중한” 것으로 구별되는데, 전자는 ‘화’와 동일시되고 후자는 좁은 의미의 ‘분노’와 동일시된다. 이 구별은 다소 모호하지만, 원칙적으로, 화는 “자기 방어를 위한 우리의 본성 안에” 놓

* J. Butler, *Joseph Butler: Fifteen Sermons Preached at the Rolls Chapel and Other Writings on Ethics*, ed. by D. McNaughton, New York: OUP, 2017, pp.75~76.

여 있는 본능적인 감정일 뿐 “정의의 집행”과 무관하지만, 좁은 의미의 분노는 도덕적 “잘못이나 불의의 출현”과 관련하여 이성 이 개입된 반응으로서 부당한 “피해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비참 함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자연이 우리의 손에 쥐어준 무기”이다. “자연적 악이 아닌 도덕적 악”에 대한 반응으로서 분노 가 객관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나타날 때, Butler는 그런 감정을 ‘분개’라고 부르고, 이것을 “사회를 결속시키는 보편적 유대들 중 하나”이자 “각 개인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를 위해 가지는 연대감”으로 간주한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위 단락에서 Butler는 먼저, 기독교의 계율 중 하나인 용서의 계율이 타인에게 일어난 불의에 대한 일반적 감정인 분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불의에 대한 사적 감정인 분노와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용서의 계율이 전자의 감정과는 무관하며 오직 후자의 감정만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Butler에 따르면, 분노와 분개, 그리고 심지어 화조차도, 모두 신이 이 세계에서 “일어날 자연적인 혼란과 도덕적인 혼란을 모두 예견”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비롭게 우리 안에 마련해 둔 “본성”의 산물이다.** 따라서 그런 자연적 감정들 자체는 계율에 의해 금지되어야 할 것들이 아니다. 심지어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사적

* Butler, *Joseph Butler: Fifteen Sermons Preached at the Rolls Chapel and Other Writings on Ethics*, pp.69~71. Butler는 이런 구별을 염두에 두면서도, 이런 구별에 따라 용어를 엄격하게 사용 하지는 않는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분개’와 ‘분노’는 분명하게 구별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 Butler, *Joseph Butler: Fifteen Sermons Preached at the Rolls Chapel and Other Writings on Ethics*, p.68; Cf. p.75.

인 불의에 대해 더 민감하므로 본성적으로 분개의 감정보다 분노의 감정이 더 크게 고양되곤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신의 계율이 그런 감정의 금지를 명령한다면, 신의 자비로운 배려와 계율 사이에 모순이 생겨난다. 따라서 Butler가 보기에 기독교의 계율이 요구하는 용서는 불의에 대한 본성적인 분개 혹은 분노의 금지를 의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감정에서 비롯하는 공정한 처벌에 대한 요구의 금지를 의미할 수도 없다.* 용서의 계율이 금지할 것은 그런 자연적이고 정당한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런 감정의 과잉과 남용이다. Butler에 따르면 분노나 분개의 감정이 과도하거나 남용되어 생겨나는 감정이 곧 가해자에 대한 증오(hatred)나 악의(malice)이며, 이런 감정의 결과로서 개인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욕구되는 것이 복수(revenge)나 보복(retaliation)이다.** 따라서 Butler에게 용서는 증오나 악의에서 비롯한 사적인 복수의 욕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결국 『도덕형이상학』에서 제시된 칸트의 용서 개념은 거의 동시대 기독교의 대표적인 용서 개념과, 적어도 정의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칸트의 용서 개념이

* Butler는 “잔혹함, 불의 그리고 잘못된 분개의 자연적 대상”이며, “세계의 존속을 위해서 반드시 피해, 불의 그리고 잔혹함은 처벌되어야 한다”(Butler, *Joseph Butler: Fifteen Sermons Preached at the Rolls Chapel and Other Writings on Ethics*, p.72; p.73)고 말한다.

** Butler, *Joseph Butler: Fifteen Sermons Preached at the Rolls Chapel and Other Writings on Ethics*, p.69.

*** Butler의 용서 개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Griswold, *Forgiveness: A Philosophical Exploration*, pp.19~37 참조. 충분한 분석 후에 그는 Butler의 용서는 “(i) 복수를 포기하는 것”과 더불어 “(ii) 동정적인 ‘선한 사람’과 정보를 갖춘 객관적 관찰자에 의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분노를 자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고 결론짓는다(Griswold, *Forgiveness: A Philosophical Exploration*, p.36).

**** 물론 이것이 칸트의 용서 개념과 Butler의 용서 개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둘의 용서 개념은 차이를 드러내는데, 예컨대, Butler는 과도

통상적 의미의 진정한 용서 개념에 미치지 못한다는 Sussman의 문제 제기는 정당하지 못하다.* 하지만 Sussman이 제기한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칸트 윤리학이 Butler가 제시한 용서 개념을 ‘실제로’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Moran은, 표면적으로 『도덕형이상학』에서 칸트가 용서를 지나친 분노 혹은 복수심의 포기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칸트 윤리학에서 용서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만일 용서가 화나 복수심의 수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때때로 용서할 의무를 가진다는 칸트의 말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용서가 화나 복수심과 같은 감정의 통제를 의미할 경우 칸트는 용서의 의무에 대해 주장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칸트는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거의 혹은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Moran의 주장이 옳다면, 설사 표면적으로 『도덕형이상학』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입장과 일치하는 용서 개념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칸트는 그런 의미의 용서를 인간의 의무로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칸트 윤리학은 통상적 의미의 진

한 분노에서 비롯한 사적 복수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결과주의적으로 설명한다. Butler, *Joseph Butler: Fifteen Sermons Preached at the Rolls Chapel and Other Writings on Ethics*, p.77 참조.

* 물론 이는 Sussman이 염두에 둔 용서 개념보다 칸트의 용서 개념이 더 통상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용서의 ‘통상적’ 의미는 애초에 불분명할 수밖에 없으며, 설사 기독교의 용서 개념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기독교의 관점에서도 다양한 용서 개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주장은 칸트의 용서 개념이 Sussman의 용서 개념보다 더 통상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칸트의 용서 개념이 적어도 칸트 시대 기독교의 대표적인 용서 개념 중 하나와 부합하는 한에서, 칸트의 용서 개념 역시 통상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 Moran, “For Community’s Sake – A Self-Respecting Kantian Account of Forgiveness”, p.422. 또한 K. Moran & J. Timmermann, “Kant on Punishment, Pardon, and Forgiveness”, pp.237~238 참조.

정한 용서 개념을 수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Sussman의 문제 제기
는 다시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칸트는, 예컨대 『인간학』에서, ‘격정’(Affekt)과 ‘열
정’(Leidenschaft)을 구별하고, “분노”(Zorn)의 감정으로 대표되는
‘격정’은 “주체 안에서 숙고가 일어나지 못하게 할” 만큼 “기습”
적이고 “성급한” 감정인 데에 반해서, “증오”(Haß)의 감정으로 대
표되는 ‘열정’은 “주체의 이성에 의해 통제하기 어렵거나 전혀 통
제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을 들여 깊이 뿌리 내린” 감정이라고 말
한다(Anth 7:251~252). 흥미로운 점은 분노와 증오는 모두 감정으로
서 이성에 의한 통제가 어렵지만, 그 이유는 서로 다르다는 것
이다. 즉, 분노는 너무 갑작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
렵지만, 증오는 너무 깊이 고착된 감정이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
렵다. 이런 구별은 『도덕형이상학』에서도 등장한다. 마찬가지로
분노는 “갑작스러운” 감정인 격정이고, 증오는 “지속적인” 감
정인 열정이다. 칸트에 따르면 두 감정의 이런 차이는 “악덕”(Laster)
과의 관계에서도 차이를 드러내는데, 분노는 갑작스럽게 생겨나
지만 금세 사라지기 때문에 “악덕과 그렇게 밀접히 결부되지 않”
지만, 증오는 다르다. 증오의 지속성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감정에
“몰두”하게 하고 나아가 차분한 “숙고”를 통해서 그 감정에 관한
“원칙”을 세우게 한다. 이런 방식으로 증오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위법적인 것을 지향할 때” 우리는 “악을 (의도적으로) 자신의 준
칙 속에 통합”하게 되고, 칸트는 이를 “진정한 악덕”이라고 경고
한다(MS 6:407~408).

이런 설명의 배후에는 이성적 행위자에 대한 칸트의 입장이

전제되어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이성적 행위자는 항상 목적을 가지고 행위할 뿐만 아니라 그런 목적을 자기 자신의 행위 이유로 항상 자유롭게 채택한다. 따라서 『정초』에서 칸트는 “이성적 존재는 오직 자유의 이념 아래에서만 행위한다”(GMS 4:448)고 말한다. Allison이 지적하듯이, 이성적 행위자의 행위능력에서 자유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이른바 “통합테제”(incorporation thesis)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통합테제에 따르면, 감정이나 욕구 혹은 경향성은 그 자체로는 이성적 행위자의 행위 이유가 될 수 없고 이성적 행위자가 그것을 스스로 자신의 준칙 속에 통합할 경우에만 비로소 그 행위자의 행위 이유가 될 수 있다.** 다시 위의 설명으로 돌아가면, 증오는 “위법적인 것을 향”한 열정, 즉 공적 처벌을 넘어선 사적 복수를 위한 “지속적인 경향성”이다(MS 6:408).*** 이런 증오의 감정 혹은 경향성은 이성적 행위자가 스스로 자신의 준칙 속에 통합할 경우에만 그 이성적 행위자의 행위 이유가 되고, 그에 따라 그 이성적 행위자는 악덕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증오나 복수욕 자체는 이성에 의해 통제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나 원칙을 찾아 숙고하도록 이성을 오도한다. 따라서 버틀러와 칸트에 의해 용서 개념이 증오에 의한 사적인 복수욕의 포기로 규정된다 하더라도, Moran이 지적

* H. E. Allison, *Kant's Theory of Freedom*, New York: CUP, 1990, p.5.

** Allison, *Kant's Theory of Freedom*, p.40. 알려져 있듯이 그는 이런 통합테제의 근거를 『종교』의 한 구절(RGV 6:24)에서 찾는다. 하지만 그는 “비록 칸트가 이 테제를 『종교』에서야 비로소 정식화했다 하더라도, 칸트가 『정초』에 앞서 이미 그 기본 생각에 찬동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Allison, *Kant's Theory of Freedom*, p.114)고 주장한다.

*** 『인간학』에 따르면 “증오의 열정은 시간을 들어 깊이 뿌리 내려서 상대방에게 앙갚음”(Anth 7:252)하려는 감정이다.

한 대로, 용서의 의무는 그런 감정이나 욕구의 의지적 금지나 포기에 대한 명령으로 이해될 수 없다. 하지만 Moran의 생각과 달리 칸트는 여전히 자신이 제시한 용서 개념에 부합하는 용서의 의무를 제시할 수 있는데, 칸트에 따르면, 용서의 의무는 인간의 덕의무 중 하나로서 준칙의 채택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칸트에 따르면 덕의무는 “준칙의 질료, 즉 동시에 의무로서 사고되는 목적에 관련”(MS 6:394~395)된다. 앞서 언급한 통합테제와 연관해서 말하자면, 덕의무는 행위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목적들 가운데에 이성적 행위자로 하여금 ‘의무인 동시에 목적인 것’을 준칙 속에 통합하도록 요구한다. 바로 이런 의지적인 통합 작용이야말로 이성적 행위자의 자유의 핵심이며, 이런 통합 작용 덕분에 자율적인 의무 수행 혹은 위반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성적 행위자는, 비록 증오나 복수욕을 의지적으로 금지 혹은 포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증오나 복수욕을 자신의 준칙 속에 통합하려는 마음의 위법적 지향성은 의지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증오에 의한 마음의 위법적 지향성이란, 앞서 살펴본 칸트의 다소 도식적인 설명에 따르면, 증오에 대해 몰두하고 숙고하여 복수를 위한 원칙을 세우도록 마음을 오도하는 것, 즉 복수의 경향성을 자신의 준칙 속에 통합하도록 마음을 오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덕의무 중 하나로서 용서의 의무는, 증오의 감정이나 복수욕 자체를 의지적으로 다스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나 욕구에 의한 위법적 지향성을 따르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

* 칸트에 따르면 덕의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단지 행위의 준칙만을 명령”(MS 6:390)한다.

리는 명령, 다시 말해서 그런 감정이나 욕구를 자신의 준칙 속에 통합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라는 명령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용서의 의무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덕형이상학』의 용서 개념과 어긋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런 마음 다스림에 대한 명령은 결국 증오와 복수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씨(Gesinnung)를 갖도록 노력하라는 명령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용서의 의무에 대한 이런 이해는 『실천이성비판』에서 제시된 칸트의 주장을 통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

『실천이성비판』에서 칸트는 ‘이웃 사랑’의 계명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념적 사랑”으로서 이웃 사랑은 “사실상 가능하기는 하지만 명령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사랑은 “실천적 사랑”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 이 계명은 “이웃에 대한 모든 의무를 기꺼이(gern) 수행”하라는 명령이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데, 왜냐하면 이런 명령은 “그 자체로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복잡한 문제를 피하고 간단히 말하자면, 만약 내가 이 명령에 따라 의무를 기꺼이 행한다면 이 명령은 불필요할 것이고, 만약 내가 의무를 행하되 기꺼이 행하지 않고 단지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만 행한다면, 이 명령과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는 실천적으로 이해된 ‘이웃 사랑’의 명령은 이웃에 대한 모든 의무를 기꺼이 수행하는 “마음씨를 가지라”는 명령이 아니라, 단지 “그런 마음씨를 갖도록 노력하라”는 명령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KpV

5:83). 마찬가지로 『도덕형이상학』에서 타인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용서의 의무 역시 정념적인 명령이 아닌 실천적인 명령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용서 개념이 증오에 사로잡힌 복수욕의 포기로 규정된다 하더라도, 용서의 의무는 증오나 복수욕 자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용서의 의무는 증오나 복수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씨를 가지라는 명령, 더 정확히는 그런 마음씨를 갖도록 노력하라는 명령이다.

용서의 의무를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마침내 우리는 Sussman의 문제 제기 그리고 Moran의 비판에 대해 답할 수 있게 된다. 증오에 사로잡힌 복수욕의 포기로 규정되는 『도덕형이상학』의 용서 개념은 적어도 전통적인 기독교의 입장 중 하나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칸트는 그런 개념에 부합하는 용서의 의무를 자신의 윤리학 내에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용서의 의무에 대한 이런 이해는 용서가 의무로 간주되는 둘째 이유에 대한 칸트의 주장을 더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앞서 지적했듯이, Sussman과 Satne에 따르면, 둘째 이유에 대한 칸트의 주장, 즉 처벌은 결코 증오로부터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용서의 의무를, 증오에 의한 과도한 처벌을 금지하는 소극적인 명령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가 제시한 대로 용서의 의무를 이해한다면, 그 주장은 단순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오에 사로잡힌 사적 처벌의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씨의 필요성을

* 칸트는 타인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이웃 사랑의 의무”로 표현하기도 한다(MS 6:450).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칸트에 따르면 증오에 의한 마음의 위법적 지향성은 “공공 연하고 난폭한 것이 아니라 은밀하고 위장된 것”이기 때문에, 증오는 단순히 복수심에 몰두하게 하여 타인에 대한 호혜적인 사랑의 의무를 망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열”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훼손”한다(MS 6:458). 다시 말해서, 타인에 대한 증오는 타인에 대한 복수욕을 감춤으로써 타인을 기만할 뿐만 아니라 마치 복수를 목적으로 삼는 일이 “가장 큰 권리인양, 심지어는 책무인양”(MS 6:460) 가장 함으로써 자기 자신조차 기만하므로, 사적 복수를 위해 증오에 사로잡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훼손하는 것, 즉 자기 자신의 도덕적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이다(Cf. MS 6:446). 따라서 용서의 의무는 단순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가 의무로 간주되어야 하는 첫째 이유가, 앞서 보았듯이, 타인에 대한 의무의 관점에 제시된 것으로 이해된다면, 둘째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즉 도덕적 완전성의 관점에서 제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용서의 의무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과 경향성에 의해 지배당하게 두지 말라”는 소극적인 “금지 명령”으로 그치지 않는다. 도덕적 완전성의 관점에서 용서의 의무는 증오나 복수욕을 “자신의 (이성의) 힘 아래에 두”고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마음씨를 갖도록 노력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담고 있다(MS 6:408).

V. 용서와 불완전한 의무: Sussman의 셋째 문제 제기에 대하여

■ 이제 Sussman이 제기한 마지막 문제를 검토해 보자. 앞서 보았듯이, Sussman에 따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용서가 ‘선택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용서 여부가 문제 되는 많은 상황에서 사실상 우리의 용서 여부는 객관적인 이유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용서를 하건 말건 도덕적 잘못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Sussman은 용서가 이렇게 선택적인 이유는 용서가 개인의 특수한 심리적 특징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칸트 윤리학에서 의무는 이성의 법칙에 따르는 자율적인 강제, 즉 “자기 강제”(MS 6:380)로 이해된다. 따라서 Sussman은 개인의 특수한 심리적 경향성의 산물인 용서가 어떻게 칸트 윤리학에서 의무로 제시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의 선택적 성격에 대한 Sussman의 이런 문제 제기는 불완전한 의무에 대한 칸트의 입장이 올바르게 이해된다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완전한 의무와 구별되는 불완전한 의무의 성격이나 범위 등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불완전한 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서 출발해서 Hill의 입장을 좇아 불완전한 의무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용서의 의무에 대한 논의로 돌아갈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완전한 의무는 넓은 의무로 간주된다. 의무인 동시에 목적인 것을 자신의 준칙 속에 통합하도록 요구하는 불완

전한 의무는 “넓은 구속력”(MS 6:391)을 갖기 때문이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법칙이 행위 자체가 아닌 행위의 준칙만을 명령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법칙이 복종(준수)에 대해서 자유로운 선택의지(Willkür)를 위한 활동 여지(재량)를 남긴다는 표시, 즉 의무인 동시에 목적인 것을 위해 행위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수행되어야 하는지 법칙이 확정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는 표시이다.(MS 6:390)

불완전한 의무는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특정한 종류의 행위들을 직접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구속력이 넓은 의무로서 불완전한 의무는, 앞서 보았듯이, 의무인 동시에 목적인 것을 자신의 준칙 속에 통합하도록, 즉 자기 자신의 완전성과 타인의 행복을 행위의 목적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내가 불완전한 의무에 따라서 나 자신의 완전성과 타인의 행복을 목적으로 채택한다 하더라도, 내가 특정한 순간에 어떤 행위를 얼마나 수행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는다. 불완전한 의무가 우리에게 특정한 목적을 준칙 속에 통합하여 채택하도록 요구할 때 그런 준칙에 부합하는 행위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그런 행위들 중에서 어떤 행위를 얼마나 수행할지에 대해 불완전한 의무는 우리의 재량에 맡기는 것처럼 보인다. 더 나아가 만일 내가 특정한 순간에 불완전한 의무에 부합하는 어떤 행위를 수행한다면, 이는 그 특정한 순간에 불완전한 의무에 부합하는 다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 하

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완전한 의무가 우리의 행위와 관련해서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내가 불완전한 의무에 따라서, 예컨대, 나 자신의 완전성을 목적으로 채택하더라도, “만일 내가 나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도대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나는 그 목적을 준칙으로 삼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위에 대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행위의 준칙에 대해서”(MS 6:392) 명령하는 불완전한 의무는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우리의 행위를 규정해야 한다. 바로 여기서 어려움이 생겨나는데, 우리의 의무적 행위 수행에 있어서 불완전한 의무가 우리에게 재량을 허용한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재량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 구절에 곧바로 이어지는 칸트의 말을 들어보자.

그러나 넓은 의무는 행위의 준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의무 준칙에 의한 다른 의무 준칙의 (예컨대, 부모 사랑에 의한 보편적인 이웃 사랑의) 제한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를 통해 실제로 덕의 실천 영역이 확장된다.(MS 6:390)

Hill이 지적하듯이 이 구절은 재량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

* M. W. Baron, *Kantian Ethics Almost without Apolog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p.88.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단락에서 칸트는, 불완전한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의 완전성이나 타인의 행복을 증진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로부터 정당하게 면제 받을 경우는 “(a) 불완전한 의무의 원리 아래에 놓인 다른 행위를 수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b) 완전한 의무에 의해 요구되는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뿐이라고 엄격히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엄격한 해석을 따를 경우 칸트 윤리학은, 칸트의 주장과 반대로, “도덕성과 상관 없는 것(중립적인 것)”(MS 6:409)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대단히 적다는 함축을 갖게 된다.*** 이는 자기 자신의 완전성이나 타인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의 범위가 대단히 넓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럴 경우 도덕적 의무와 상관없는 우리의 자유로운 행위들의 범위는 지나치게 제한될 것이 분명하다. 그뿐 아니라 Hill은, 타인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사랑의 의무의 ‘보편적’ 성격에 대한 칸트의 다음과 같은 말에 주목한다.

인간성 일반에 대한 자신의 이념 안에 전체 인류를 (나 자신도 함께) 포괄하는 입법적 이성, 인간이 아닌 보편적 입법자로서, 평등의 원리에 따라 내 결의 모든 타인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상호적인 호의의 의무 속에 함께 포함한다.(MS 6:451)

* T. E. Hill, Jr., “Kant on Imperfect Duty and Supererogation”, *Kant-Studien*, 62(1971), p.58.

** Baron, *Kantian Ethics Almost without Apology*, p.89.

*** Hill에 따르면 엄격한 해석은 “도덕성과 상관없는 것은 사실상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Hill, “Kant on Imperfect Duty and Supererogation”, p.59). Baron은 이런 Hill의 주장이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엄격한 해석은 “도덕성과 상관없는 행위들을 위한 여지를 너무 조금 남긴다”고 비판한다(Baron, *Kantian Ethics Almost without Apology*, p.92).

이 구절은 의무 위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 “적어도 간접적인”(GMS 4:399) 의무라는 『정초』의 주장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이 단락은 타인의 행복 증진을 목적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사랑 혹은 호의의 의무가 자기 자신의 행복 증진을 목적으로 삼는 행위를 허용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호의의 의무 법칙” 없이도 자연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도록 도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호의의 의무 법칙이 “의무 지움을 위해 필수적인 법칙의 보편성”을 갖는 한에서, 그리고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평등한 한에서, 호의의 의무 법칙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를 도덕적 잘못으로 간주하게 하지 않는다(MS 6:451). 따라서 엄격한 해석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이 단락에 따르면, 타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를 선택 및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행위 대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를 선택 및 수행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비판에 근거해서 Hill은 불완전한 의무의 재량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제시한다. 이 대안적 해석에 따르면 불완전한 의무는 단지, 그런 의무의 “원리를 진지하게 채택한 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가끔 기회가 있을 때 그 원리에 따라 행위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Hill은 불완전한 의무가 허용하는

* Hill, “Kant on Imperfect Duty and Supererogation”, p.58.

재량을 (a) 지금 상황이 불완전한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인지 결정할 재량, (b) 불완전한 의무가 적용되는 지금 상황에서 불완전한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 방식을 선택할 재량, 그리고 (c) 다음 기회에 수행할 생각이라는 전제하에서, 현재 상황에서 불완전한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를 수행하지 않을 재량이라고 기술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c)인데, (c)의 재량은 불완전한 의무가 적용되는 특정한 상황에서 그 의무에 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Hill의 해석은 칸트 윤리학에서 불완전한 의무가 Sussman이 용서와 관련하여 우려했던 성격, 즉 선택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용서의 의무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보자. 용서의 의무

* Hill, "Kant on Imperfect Duty and Supererogation", p.61. 물론 Hill은 모든 불완전한 의무들이 이 세 가지 재량을 허용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존경의 의무는 불완전한 의무임에도 재량의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적어도 (c)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다(Hill, "Kant on Imperfect Duty and Supererogation", pp.61~62 참조). Baron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완전성에 대한 불완전한 의무의 재량은 타인의 행복에 대한 불완전한 의무보다 재량의 범위가 더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주장한다(Baron, *Kantian Ethics Almost without Apology*, pp.95~102 참조). 하지만 이 논문의 주제인 용서의 의무는 세 가지 재량을 모두 허용하는 사랑의 의무에 속하므로, 여기서 우리는 Hill과 Baron의 세부적인 구별은 언급하지 않는다.

** 더 나아가서 Hill은 넓은 재량을 가진 불완전한 의무를 초의무적인 것과 연결시킨다. Hill의 이런 시도는 "칸트의 윤리학이 초의무적인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Hill, "Kant on Imperfect Duty and Supererogation", p.55)는 몇몇 철학자들의 비판에 맞서서 칸트 윤리학은 "초의무적 행위의 자리를 가지고 있음"(Hill, "Kant on Imperfect Duty and Supererogation", p.73)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어서 Hill은 "칸트는 이 모든 것을 의무라는 그의 제한적인 용어로 말하고자 했지만, 의무적인 것과 그저 하는 것이 선한 것(즉, 초의무적인 것)을 일찍이 구별함으로써 더 간단히 표현할 수 있었다"(Hill, "Kant on Imperfect Duty and Supererogation", p.74)고 지적하면서, '불완전한 의무'라는 칸트의 용어 사용을 비판한다. 이런 Hill의 주장은 결국, 적어도 일부의 불완전한 의무들은 초의무적인 것, 즉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지만 따를 경우에는 칭찬받을 만한 것에 해당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불완전한 의무의 넓은 재량에 대한 Hill의 해석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초의무적인 것과의 연결에 대한 그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Baron, *Kantian Ethics Almost without Apology*, pp.21~58 참조.

는 상호적인 호의의 의무, 즉 사랑의 의무에 속한다. 그리고 Hill의 해석에 따르면 불완전한 의무로서 사랑의 의무는 우리에게 적어도 세 가지 재량을 허용한다. 따라서 우리는 용서의 의무 역시 세 가지 재량을 허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용서의 의무는 현재의 상황이 용서의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인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재량을 허용한다. 예컨대, 우리는 이 재량에 의해 과연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정당한 공적 처벌을 받았는지 혹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지 고려할 수 있다. 만약 그가 정당한 공적 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현재 상황이 용서의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로, 현재의 상황이 용서의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용서의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를 스스로 선택할 재량을 가진다. 앞서 보았듯이 용서의 의무는 우리에게 증오나 복수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씨를 갖도록 노력하라고 명령하므로 우리는 이에 부합하는 행위 방식들, 예컨대 가해자의 잘못에 대한 비난 또는 힐책을 중단하거나 증오 및 복수욕을 추스를 수 있는 다양한 행위 방식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재량을 허용한 후에도, 마지막으로, 용서의 의무는 현재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용서의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를 과연 수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재량을 우리에게 부여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재량이 용서의 행위에 선택적 성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칸트 윤리학에서 불완전한 의무들이 공유하는 이런 선택적

* 이에 대해서는 Satne, "Forgiveness and Moral Development", pp.1045~1047 참조.

성격은, Sussman이 우려한 것처럼 단순히 변덕스러운 심리적 경향성에서 비롯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 번째 재량에는 이성적 고려가 깊이 개입한다.

앞서 언급한 ‘통합테제’를 다시 떠올려보자. 통합테제에 따르면 우리의 심리적 경향성은 그 자체로는 이성적 행위자의 행위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이성적 행위자가 스스로 자신의 준칙 속에 그런 경향성을 통합할 경우에만 비로소 그 이성적 행위자의 행위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불완전한 의무로서 용서의 의무는 직접적으로 행위의 수행을 요구하기보다 준칙의 채택을 요구한다. 따라서 어떤 이성적 행위자가 용서의 의무에 따른다는 것은 그의 이런저런 심리적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씨, 즉 증오나 복수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씨를 갖기 위해 노력하라는 준칙을 채택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Hill이 제시한 (c)의 재량에 따르면 용서의 의무를 따르는 어떤 이성적 행위자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준칙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도덕적 잘못을 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가 여전히 용서의 준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의무의 재량 범위와 관련하여 앞서 인용한 칸트의 말에 따르면, 불완전한 의무의 재량은 결코 “준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MS 6:390)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Hill이 (c)의 재량을 기술하면서 ‘다음 기회에 수행할 생각이라는 전제하에서’라는 단서를 단 것도 그 때문이다. 즉, 용서의 의무와 관련하여 (c)의 재량은 지금 이 순간은 용서의 준칙을 따르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이유가 있는 한에서 지금 이 순간 용서의 준

칙에 부합하는 행위를 유보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완전한 의무나 다른 불완전한 의무의 이행 혹은 심지어 자기 자신의 행복 추구를 이유로 용서의 준칙에 부합하는 행위를 유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용서의 준칙을 포기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자기 자신의 행복 추구와 관련해서 개인의 우연적인 심리적 경향성이 용서의 행위를 유보하는 데에 이성적인 고려 사항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심리적 경향성 자체가 용서의 행위를 유보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요컨대, 용서의 행위는 이성적 고려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행될 수 있지만 불완전한 의무로서 준칙의 채택을 요구하는 용서의 의무 자체는 우리에게 선택적이지 않다. 따라서 칸트의 윤리학은 Sussman의 셋째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을 마련할 수 있다.

VI. 나가는 말

■ Sussman의 세 가지 문제 제기는 칸트 윤리학을 통해 용서의 의무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마주하게 되는 핵심적인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았듯이, 칸트의 용서 개념과 용서의 의무는 칸트의 윤리학 체계 내에서 충분히 정합적으로 해명될 수 있다. 우선 칸트의 윤리학에서 용서 개념은 공정한 공적 처벌의 전제하에서 증오에 사로잡힌 사적인 복수 욕구의 포기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런 용서 개념에 따라 인간의 도덕적 의무 중 하나로 제시되는 용서의 의무는 증오나 복수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씨를 갖도록 노력하라는 불완전한 의무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용서의 의무는 적어도 기독교의 전통적인 용서 개념 중 하나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도덕적 완전성과 관련한 적극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용서의 선택적 성격에 대한 우리의 통상적 이해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시도는 칸트의 종교철학이나 인간학에 호소하여 칸트의 용서 개념을 이해하려는 시도와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예컨대 『종교』의 ‘은총’ 개념이나 『인간학』의 ‘용기’ 개념에 호소함으로써, 칸트의 용서 개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긍정적으로건 부정적으로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진정한’ 용서 개념이 무엇인지는 그 자체로 논란거리이다. 따라서 우리는 칸트의 용서 개념이야말로 진정한 용서 개념임을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Sussman의 문제 제기에 대해 우리가 제시한 답변이 옳바르다면, 우리는 칸트의 용서 개념이 지니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칸트는 공정한 처벌에 대한 요구와 용서에 대한 통상적 이해에 모두 부합하는 용서 개념의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칸트의 용서 개념은 용서의 의무를 타인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즉 타인의 행복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도덕적 완전성의 관점에서도 정초함으로써 용서의 의무적 성격을 강화한다. 만약 우리가 더 훌륭한 용서 개념을 찾아야 한다면, 칸트의 이런 용서 개념은 긍정적으로건 부정적으로건 그 출발점이 될 수

* 『종교』의 “은총” 개념과 관련해서는 Sussman, “Kantian Forgiveness”, pp.91~105; 『인간학』의 “용기” 개념과 관련해서는 정성관, 「칸트 철학에서 본 정의와 용서」, 46~48쪽 참조.

있다. 칸트의 용서 개념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런 보완되어야 할 점은 칸트의 용서 개념이 가진 장점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충돌한다면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은 진정한 용서 개념을 찾아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 예컨대, 우리는 칸트의 용서 개념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도덕적 관계 회복이라는 요소가 부족하다는 Sussman의 지적에 동의한다. 비록 칸트가 용서의 일부로서 “화해(Versöhnlichkeit)는 인간의 의무”(MS 6:461)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한 칸트의 용서 개념에 비추어볼 때, 칸트가 말하는 화해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화해보다는 피해자의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 더 가까워 보이기 때문이다.

- ◆ 정성관, 「칸트 철학에서 본 정의와 용서」, 『철학논집』, 54(2018), 31~51쪽.
- ◆ Allison, H. E., *Kant's Theory of Freedom*, New York: CUP, 1990.
- ◆ Baron, M. W., *Kantian Ethics Almost without Apolog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 ◆ Butler, J., *Joseph Butler: Fifteen Sermons Preached at the Rolls Chapel and Other Writings on Ethics*, ed. by D. McNaughton, New York: OUP, 2017.
- ◆ Griswold, C. L., *Forgiveness: A Philosophical Exploration*, New York: CUP, 2007.
- ◆ Hill, T. E. Jr., "Kant on Imperfect Duty and Supererogation", *Kant-Studien*, 62(1971), pp.55~76.
- ◆ Kant, I., *Kants gesammelte Schriften*, hrsg. Königliche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 / Deut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 zu Berlin, 1900~2009.
- ◆ Lang, B., "Forgiveness",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31(1994), pp.105~117.
- ◆ Moran, K., "For Community's Sake - A Self-Respecting Kantian Account of Forgiveness", in S. Bacin, A. Ferrarin, C. La Rocca & M. Ruffing (eds.), *Kant und die philosophie in weltbürgerlicher Absicht. Akten des XI. Internationalen Kant-Kongresses*, Boston: de Gruyter, 2013, pp.419~430.

- ◆ Moran, K. and Timmermann, J., “Kant on Punishment, Pardon, and Forgiveness”, in P. Satne & K. M. Scheiter(eds), *Conflict and Resolution: The Ethics of Forgiveness, Revenge, and Punishment*, Cham: Springer, 2022, pp.225~238.
- ◆ Ricken, F., “Die Religionslehre als Lehre der Pflichten gegen Gott liegt außerhalb der Grenzen der reinen Moralphilosophie (TL 6:486–491)”, in A. Trampota, O. Sensen & J. Timmermann(eds.), *Kant’s “Tugendlehre”: A Comprehensive Commentary*, Berlin/Boston: De Gruyter, 2013, pp.411~430.
- ◆ Satne, P., “Forgiveness and Moral Development”, *Philosophia*, 44(2016), pp.1029~1055.
- ◆ Schönecker, D., “Duties to Others from Love”, in A. Trampota, O. Sensen & J. Timmermann(eds.), *Kant’s “Tugendlehre”: A Comprehensive Commentary*, Berlin/Boston: De Gruyter, 2013, pp.309~341.
- ◆ Sussman, D., “Kantian Forgiveness”, *Kant-Studien*, 96(2005), pp.85~107.
- ◆ Trampota, A.,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an End in Ethics”, in A. Trampota, O. Sensen & J. Timmermann(eds.), *Kant’s “Tugendlehre”: A Comprehensive Commentary*, Berlin/Boston: De Gruyter, 2013, pp.139~157.



■ 본 논문은 칸트 윤리학 내에서 용서 개념과 그 의무적 성격을 탐구한다. 『도덕형이상학』에서 칸트는 용서를 인간의 덕의무 중 하나로 간략히 규정하지만, 이런 간략한 규정은 칸트의 용서 개념과 용서의 의무를 이해하는 데에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낳는다. 특히 Sussman은 이런 어려움을 세 가지 문제로 요약하고, 이런 문제들은 칸트의 윤리학 저술을 넘어서 칸트의 종교 철학 저술을 통해서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도덕형이상학』을 중심으로 한 칸트의 윤리학 저술들에서 Sussman이 제기한 세 가지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 마련될 수 있다고 논증한다. 이런 논증을 통해 우리는 칸트의 윤리학에서 용서 개념이, 공정한 공적 처벌의 전제하에서, 증오에 사로잡힌 사적인 복수 욕구의 포기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런 용서 개념에 따라서 용서의 의무는 증오나 복수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씨를 갖도록 노력하라는 불완전한 의무로 이해될 수 있음을 밝힌다. 결론적으로 이 논의는 용서의 의무가 칸트의 윤리학 체계 내에 정합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용서에 대한 현대의 발전적 논의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칸트, 용서, 처벌, 복수, 증오, 불완전한 의무, 재량



Kant's Concept of Forgiveness and the Duty to Forgive: Focusing on Sussman's Three Problems

Hong, Woo Ra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Philosophy · Associate Professor)

■ This paper explores the concept of forgiveness and its obligatory character within Kant's ethics. In the *Metaphysics of Morals*, Kant briefly defines forgiveness as one of the duties of virtue, yet this concise definition gives rise to various challenges in understanding Kant's concept of forgiveness and the duty to forgive. Sussman summarizes these challenges into three problems, arguing that they can be resolved only by moving beyond Kant's ethical writings to his works in the philosophy of religion.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proper answers to the three problems raised by Sussman can indeed be found within Kant's ethical writings, with a focus on the *Metaphysics*

of Morals. Through this argument, it is revealed that in Kant's ethics the concept of forgiveness can be defined, under the presupposition of just public punishment, as the renunciation of the hatred-dominated desire for private revenge, and thus the duty to forgive can be understood as an imperfect duty to cultivate a disposition that enables one to free oneself from hatred or the desire for revenge. In conclusion, this paper not only shows that the duty to forgive can coherently be situated within Kant's ethical system, but also contributes, directly or indirectly, to contemporary constructive discussions on forgiveness.

Keywords: Kant, forgiveness, punishment, revenge, hatred, imperfect duty, latitude

- ◎ 투고 접수 2025. 10. 30.
- ◎ 심사 완료 2025. 12. 16.
- ◎ 게재 결정 2025. 12. 19.